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216
----------	-------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제안자	회부일	회의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2103258	박재호의원 등 10인	'20.8.26.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20.11.6.)
				소위 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1.17.)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2105821	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0.11.30.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1.2.19.)
				소위 심사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6.10.)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2108699	박주민의의원 등 13인	'21.3.1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1.6.18.)
				소위 심사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2108791	천준호의원 등 40인	'21.3.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1.6.18.)
				소위 심사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2109291	신영대의의원 등 10인	'21.4.5.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1.9.1.)
				소위 심사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2109639	문정복의원 등 16인	'21.4.22.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1.9.1.)
				소위 심사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회부일	회의정보	
	2111580	심상정의원 등 30인	'21.7.2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소위 심사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2111859	이종성의원 등 12인	'21.8.3.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소위 심사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2113905	송석준의원 등 10인	'21.12.1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소위 심사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12.22.)

나.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2.)에  
서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  
로 의결함.

다.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1.12.27.)는 교통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만, 여전히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의 궤도·삭도는 사람의 운송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저상버스는 2019년 전국 도입률이 26.5%에 불과하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0% 미만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현재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각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지원 정도의 편차가 큼.

이에,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에 궤도·삭도를 포함시키고,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대체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도(道)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상호 협력하여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등).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의에 궤도차량과 그 밖의 궤도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체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다.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라.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상호 협력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마. 국가 또는 도(道)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 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 사.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 4. 부대의견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1호를 조속히 개정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제2조제3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철도사업법」”을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제1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체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이동지원센터”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

호 협력하여야 한다.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lt;신 설&gt;</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바. (생 략)</p> <p>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lt;신 설&gt;</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사.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궤도운송법</u>」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사.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p> <p>3.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궤도운송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아. (현행 라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p>



4. (생략)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 8. (생략)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⑥ (생략)

<신설>

4. (현행과 같음)

5. -----  
-----  
---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  
-----  
-----  
-----  
-----  
-----  
-----.

6. ~ 8.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체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생략)

<신설>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  
-----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